1. 환경탓

환경이 절대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은 모두 강도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 규칙을 세우고자 법을 만들고 모두가 그것을 따르기로 했고 법을 어길시에는 공평하게 벌을 받기로 정했다. 법을 어긴 정도가 같다면 나이,직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의 죄를 환경의 탓으로 정당화 시킬시, 자칫 나도 해볼까?하는 식으로 또 다른 범죄행위를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

1. 사회적 낙인 -> 기회 주어야함.

요즘에는 소년범죄가 널리 알려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에게 약한 처벌을 가하고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 기회는 갱생의 기회가 아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쥐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되어 그 칼날이 또 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우리는 가해자에게 관대를 베풀기 전에 피해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한다.

대표적으로 2020/3/29 에 대전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일으킨 무면허ㆍ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촉법소년이 경찰서에서 ‘구미경찰서 재낄준비’라는 문구를 달아 SNS에 사진을 올렸다. 이는 ‘보호’를 악용한 범죄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77206

1. 본래 법제도 실효성 없음.

본래의 법제도의 시행 결과로 최근 소년강력범죄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해 범죄를 쉽게 보지 못하게 해야하고, 지금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게 되어 후에 그들이 성장하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청소년법을 강화하여 미리부터 예방해야한다.

4. 소년원에서 더 강력한 범죄자

--> 일반 교도소도 아닌 소년원에서는 청소년의 교정,교육이 목적이므로 신빙성이 없음.

5. 의사결정 나이 X --> 책임 지울 수 없음

-->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건 인지하지만,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실제 미국에서는 부모책임법이 있어서 주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사회봉사, 교육, 구금 등을 시행하고있다.

재반론) 부모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

🡪

https://www.kic.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Kz02vaaDKAChbNc0kbwTyevRElzbC58Jdmor4qpskyAe0XUKgzcK6fWa5RZaYdot.kicwas\_servlet\_engine2?atchFileId=FILE\_000000960052302&fileSn=0&browser=Opera